



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

수신 각 조합원사

(경유)

참조

제목 위장사고(보험사기) 방지 협조 요청

1. 우리조합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조합에서는 중대한 범법행위인 위장사고(보험사기)를 근절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,

3. 최근 위장사고(보험사기)는 조직화, 지능화,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로 사고내용 조작, 운전자 및 사고차량 바꿔치기, 피해물 조작 등 다양한 형태로 적발되고 있습니다.

4. 적발된 위장사고는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동차공제 50%, 적재물공제 500% 특별할증 적용 등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.

5. 이에 위장사고(보험사기)에 대한 내용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조합원사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소속 차주 및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 임 : 위장사고 (보험사기) 안내 1부, "끝"

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
경기지부장



담당 피해경

과장 윤영선

총무차장 박상철

지부장 결재 07/12
안주현

시행 경기 제02991호 (2023.07.12)

종결 ()

우 1630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 (송죽동, 경기회관 5,6층) / <https://www.truck.or.kr>

전화 031-242-3355 팩스 031-258-3355 / phk1120@truck.or.kr /

【붙임】

보험사기의 정의

■ 보험사기 행위

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*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. [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(2016. 09. 30. 시행) 제2조]

*기망 :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

보험사기 처벌

■ 보험사기 행위의 처벌

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(2016. 09. 30. 시행) 제8조]

■ 보험(공제)할증 : 자동차공제 50%, 적재물공제 500% 특별할증 적용

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

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<https://www.tacss.or.kr>

▶ 전화 : 1670-1674

▶ 우편 :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빌 11, 2층

(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)

■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경기지부

▶ 대표번호 : 031-259-3401~3

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자 포상제도

■ 포상금 지급대상

▶ 신고센터에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, 신고한 사항이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공제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되었거나,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.

*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됨.

■ 포상금

▶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기준*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관련 공제조합이 지급하며 각 기관별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.

*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공제조합의 내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음.